

# 2025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공고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상남도 「2025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9.

하 동 군 수

## 1 사업 개요

지원규모 : 1개소

지원대상

- 하동군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 하는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경상남도(하동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제외 대상 〉

- 사업 최초시행 이후('23~'24년) 본 사업 수혜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지원요건 충족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 예정 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불임2]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항목

기술분야	지원품목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QR·앱·웹 기반 등
VR·AR	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등
3D	3D 풋 스캐너, 3D 프린터기 등
AI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등
기타	디지털 메뉴보드 디지털 광고보드, 웨이팅 보드, LCD전자칠판, 주방 자동화 설비*(소프트웨어 제외) 등 * 자동슬라이서, 자동웍, 주방자동기계 등 실제 형태가 있는 기기로 소프트웨어와 같은 프로그램은 제외

## 〈 유의사항 〉

-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 복수 선택 가능

### 선정기준

- 선정주체 : 하동군
- 선정방법 : 사업을 신청받아 평가표[붙임3]에 의해 선정
- 평가항목
  - (정성평가) 20점(적정성 10, 필요성 10)
  - (정량평가) 80점(연매출 25, 업력 15, 시설현황 25, 근로자수 15)
  - (가 산 점) 10점(생활밀접업종[붙임4] 2, 제로페이 가맹점 6, 경영대상 수상 2)

## 2 사업신청 안내

접수기간 : 2025. 11. 19.(수) ~ 11. 26.(수)

### 접수처

- 하동군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방문접수

- 하동군 경제통상과

- 등기우편

- (52333)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055-880-2805)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해야 인정

※ 등기우편 미도달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발표 : 2025. 11월 중

\*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소상공인에게 개별 통보함

##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①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①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3호 서식]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⑥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⑦ 국세 완납증명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건축물대장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⑪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⑫ 견적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첨부서류 ④~⑩ 제출 생략 가능 * ⑤, ⑥서류 및 ⑩, ⑪서류는 각각 해당하는 서류로 제출
	②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1. 지원금 신청서[제5호 서식] ① 완료보고서[제6호 서식] ② 지출증빙서류 ③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기타	1. 사업 변경 요청서 [제7호 서식] 2. 사업 포기 신청서 [제8호 서식]	

※ ①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

※ ②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선정된 대상자가 시공(제작)을 완료한 후, 지원금 신청을 위한 절차

## 3 추진일정 및 절차

### □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선정자 발표	사업시행	지원금 지급신청
'25. 11. 19.(수) ~ '25. 11. 26.(수)	'25. 11월 중(예정)	선정 통지일 이후 ~ '25.12.8.(월)까지	시공(제작) 완료 후 ~ '25.12.12.(금)까지

### □ 추진절차

① 공고	사업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공고</li> </ul>
↓		
② 신청 및 선정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우편, 방문)</li> <li>▸ 접수처 : 하동군 경제통상과</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건축물대장, 상시종업원 수 확인서류, 표준견적서</li> </ul> </div>	
↓		
평가 및 선정 (하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 시행 및 최종확정(하동군)</li> <li>• 최종 선정결과 개별 통보(하동군→선정점포)</li> </ul>	
↓		
③ 사업 시행	디지털 인프라 지원 시행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별 디지털 인프라 지원 시행</li> </ul>
↓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 시행(통보 전 시행 시 지원 불가)</li> <li>☞ 사업 시행기간 지정 : 선정결과 통보 후 3개월 내(원칙)</li> </ul> </div>		
↓		
④ 지원금 지급	비용 지급 (소상공인→시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시행사에 선지출</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좌이체 원칙</li> <li>※ 카드 결제, 간이 영수증, 현금, 어음지급 인정불가</li> </ul> </div>	
	지원금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하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li> </ul>
↓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비서류 :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li> </ul> </div>		
지원금 지급 (하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 시 점포 현장점검 실시</li> <li>• 증빙서류 등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li> <li>※ 구비 서류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ul>	

## 4

## 신청시 유의사항

- 서류 제출 : 총 2회(사업신청서<계획>, 지원금 신청서<완료보고>)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 지원 선정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휴·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등에 통보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시장·군수가 판단한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 (사업변경) 사업변경요청서[제7호 서식] 제출
    - ※ 하동군의 사전 승인 필요
  - (사업포기) 사업포기신청서[제8호 서식] 제출
    -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중에서 선정(다음 연도 지원 불가)
- 공급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정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체’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업체로 선정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선정 불가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옥외간판교체 시 비대상 확인서 발급 불가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하동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하동군에서는 필요시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 할 수 있음
  -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하동군에서 자체 판단

○ 지원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수기세금계산서’(3억원 이하)와 ‘현금영수증’으로 제출 가능하며 시공업체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지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사업자 폐업 또는 전매 사항 후 재지원 불가
- 사업기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 5 문의 및 접수처

구 분	부 서	주 소	전화번호
하동군	경제통상과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880-2805

# 붙임 1

## 소기업 규모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2**

**'25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56211	일반유희 주점업
56212	무도유희 주점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71531 중	기획부동산업
75330 중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예: 흥신소, 탐정업 등)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예: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매흡
정성평가 (20점)	적정성 (10점)	사업장 현황 및 개선의지	10	8	6	4	2
	필요성 (10점)	지원 필요사유 및 활용방안	10	8	6	4	2
정량평가 (80점)	연매출 기준 (25점)	점포 연매출 기준	15	12	9	6	2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10	8	6	4	2
			-10% 이상	-10% 이상 -5% 미만	-5% 이상 -0% 미만	0% 이상 10% 미만	10% 이상
	업력 현황 (15점)	사업영위기간	15	12	9	6	2
			12년이상	10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3년미만
	시설 현황 (25점)	점포 면적	15	12	8	5	2
			33㎡이하	99㎡이하	165㎡이하	231㎡이하	232㎡이상
		점포 형태	10			5	
			임차			자가	
일자리 현황 (15점)	상시근로자수	15	12	9	6	3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0명	1명	2명	3명	4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명 이하	2~3명	4~5명	6~7명	8명 이상	
가산점 (최대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밀접형 업종(2점)</li> <li>■ 제로페이 가맹점(6점)</li> <li>■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자 특전(2점)</li> </ul>				
합계	110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가산점은 최대 10점 인정 - 동점자 처리 : 동점일 경우 정량평가, 정성평가, 업력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신규창업자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최저점(2점) 부여					

**붙임 4**

**생활밀접형 40개 업종**

(단위 : 명)

업종	도내 사업자 수	업종	도내 사업자 수
가전제품수리점	179	여관·모텔	200
과일가게	121	예술학원	194
교습소·공부방	771	옷가게	600
교습학원	465	일식음식점	258
기술및직업훈련학원	218	자동차수리점	286
기타외국식음식점	396	정육점	250
기타음식점	292	제과점	237
꽃가게	222	주차장운영업	163
노래방	156	중식음식점	306
당구장	171	채소가게	163
미용실	548	커피음료점	1,503
부동산중개업	552	통신판매업	8,770
분식점	684	패스트푸드점	717
생선가게	195	펜션·게스트하우스	456
슈퍼마켓	193	편의점	475
스포츠교육기관	308	피부관리업	877
스포츠용품점	168	한식음식점	6,067
식료품가게	413	호프주점	226
실내장식가게	713	화장품가게	450
애완용품점	114	휴대폰가게	182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 기준(귀속년도 : 2023년, 공표시기 : 2024년)

# 2025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신청서식

## ① 사업신청 시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	1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	2
[제3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3
[제4호 서식]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4

## ② 지원금 신청 시

[제5호 서식] 지원금 신청서 .....	5
[제6호 서식] 완료보고서 .....	6

## ③ 기타

[제7호 서식] 사업 변경 요청서 .....	7
[제8호 서식] 사업 포기 신청서 .....	8

**『2025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사업신청 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구 분	제출자료 목록	확 인
<b>발급 서류</b>	<b>1.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b>	
	<b>2. 매출증명서류</b> (①, ② 중 해당) ①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②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 매출액 확인 불가 시 지원 제외 - '23년도 매출액 신고내역서 대체 가능(원칙) - '23년도 서류 발급이 불가 할 경우 '22년 서류 대체 가능	
	<b>3. 국세 완납증명서</b> * 체납있을 경우 지원 제외 ※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b>4. 지방세 완납증명서</b> * 체납있을 경우 지원 제외 ※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b>5. 건축물대장</b> ※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	
	<b>6. 상시근로자(종업원) 확인서류</b> (①, ② 중 해당)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a href="http://www.nhis.or.kr">www.nhis.or.kr</a> ②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 발급처 - 현장 발급 : 4대보험 인근지사(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창구에서 발급 신청 - 인터넷발급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a href="http://www.4insure.or.kr">www.4insure.or.kr</a>	
<b>작성 서류</b>	<b>1. 사업신청서</b> [제1호 서식]	
	<b>2. 사업계획서</b> [제2호 서식]	
	<b>3. 견적서</b> (사업시행 업체 견적서 작성)	
	<b>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b> [제3호 서식]	
	<b>5.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b> [제4호 서식]	



사업계획서					
<b>신청항목</b>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LCD전자칠판 등)				
<b>상세 소요비용</b> (200만원 지원, 공급가액 70%)	<b>품목명</b>	<b>수량</b>	<b>합계</b>	<b>공급가액</b>	<b>부가세</b>
		개	원	원	원
		개	원	원	원
<b>사업장 현황</b>	(사업장 현황, 경영상태 등)				
<b>지원 필요성</b>					
<b>사업내용</b>					
<b>추진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b>내부사진(매장 전체 촬영)</b>			<b>외부사진(간판 보이게 촬영)</b>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사업자등록증	6	건축물대장
2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4	국세 납세 증명서		
5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수집.이용목적** : 경상남도과 시·군(신청지역)에서는 경상남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집항목**

-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 ③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 경상남도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_\_\_\_\_ (인)

하동군수 귀중

**『2025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지원금 신청 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구 분	제출자료 목록	확 인
<b>발급 서류</b>	<b>1. 지출증빙서류(①, ② 모두 제출)</b> ①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② 세금계산서(아래 해당되는 서류) > (공급업체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원칙), 수기세금계산서 > (공급업체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현금영수증 ☞ 수기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출의 경우 공급업체의 '직전년도(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제출 - 지출 증빙서류] 미 구비시 지원 금액 제외 될 수 있음	
	<b>2.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b>	
	<b>3.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b>	
<b>작성 서류</b>	<b>1. 지원금신청서 [제5호 서식]</b>	
	<b>2. 완료보고서 [제6호 서식]</b>	



## 완 료 보 고 서

<b>완 료 보 고 서</b>						
<b>신청항목</b>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LCD전자칠판 등)					
<b>구입일 (설치기간)</b>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b>사업내용</b>						
<b>개선내용 (전/후)</b>						
<b>사업 전</b>				<b>사업 후</b>		



